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7월 3일, 조경태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7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8.3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9.16.)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9.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경태 의원)

현행법상으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강화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이에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기준을 구체화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며,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에는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을,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는 기관부 항해당직 부원을 승무시키도록 하도록 하고, 또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일정한 선박에도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변경하여 증서에 기재된 인원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과 증서 명칭도 함께 정비하도록 하는것임(안 제17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성민)

가. 항해당직 부원 기준 및 극지해역 자격기준 설정

개정안은 현행법 제64조제1항의 항해당직 부원 승무기준을 세분화하여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에는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을,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을 각각 승무시키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안 제64조제7항을 신설하여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일정한 선박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키도록 함으로써 극지해역 운항에 필요한 선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통하여 항해당직 부원 승무기준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극지해역 운항선박에 대하여 운항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선원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용어 수정

개정안은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최소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국제협약과의 용어 정합성을 높여 외국 항만국 검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 제6장 적용 제외 선박에 대한 여객선선장 적성심사 적용

제68조제1항에 따라 제6장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에 대해서도 여객선선장의 적성심사에 관한 제66조의2는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실무상 이루어지고 있는 적성심사의 대상과 법률상 대상을 일치시키려는 취지로 보임.

평수구역은 연안·항만 인근 등 비교적 육지에 가까운 수역을 포함하고 있어 선박의 입·출항 및 다른 선박과의 교행 과정에서 충돌·좌초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해서도 선장의 항로 숙지도 및 비상상황 대응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성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보임.

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규정 신설 등

개정안은 선원과 선박소유자의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실질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선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선교)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